

#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12.14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2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21 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특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### 가. 제안이유

- 전자결재 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을 명문화하고  
무인 민원발급기 및 복합 인증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사용근거)안 제2조)
-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규정(안 제2조)
-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안전대책(안 제14조)
- 개인정보보호 신중토록 규정(안 제15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이 조례는 평창군 공인의 규격·관수방법, 공고요령과 그밖의  
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

그간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고  
무인민원 발급기 및 복합인증기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맞게  
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토론요지 : 없 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붙 임 :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